

#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발의자: 김용연 의원
- 나. 의안번호: 제2498호
- 다. 발의일자: 2021. 5. 28.
- 라. 회부일자: 2021. 6. 1.

### 2. 제 안 사 유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리인의 지정,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하며,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의 지원 근거를 신설함.

### 3. 주 요 내 용

- 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실태조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 나.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 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3 신설).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석면안전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 5. 검토의견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실태조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작업 감리인의 지정,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2015년부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비규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 제9조의2는 어린이, 노인 등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석면실태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음.

#### 〈2021년 비규제 다중이용시설 석면 실태조사〉

- ▶ 조사대상: 어린이집, 노인 등 건강민감군 이용 비규제 다중이용시설 120개소
  - 지역아동센터(500㎡ 미만), 학원(430㎡ 미만), 노인요양시설(1,000㎡ 미만) 등
- ▶ 조사기간: '21. 5 ~ 10월
- ▶ 사업예산: 38,400천원(석면조사기관 용역)
- ▶ 사업내용: 석면조사, 위해성평가, 석면안전관리 요령 컨설팅, 석면농도측정(보환경)  
※ '20년 실적: 70개소 조사(석면 검출 33개소: 위해성평가 '낮음' 등급)

-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하 ‘감리인’)의 지정, 등록, 등록의 결격사유 및 업무, 감리인의 평가, 등록 취소, 청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인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지만,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재기재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 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sup>1)</sup>이 있을 수 있음.

### 〈「석면안전관리법」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 비교〉

석면안전관리법	본 일부개정조례안
<b>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 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li> <li>② ~ ③ (생략)</li> <li>④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li> </ul>	<b>제12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li> <li>②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 바에 따른다.</li> </ul>
<b>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li> <li>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li> </ul>	<b>제12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li> <li>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li> <li>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li> <li>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관리</li> <li>3.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li> <li>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노출방지 대책 검토</li> <li>5.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li> <li>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li> </ol> </li> </ul>

1) 자치법규 입안메뉴얼 P. 9